#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군의회 의견청취 검토보고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의결주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본 의안을 제출함
  ○ 주문내용 :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지방의회 보고
3. 보고의 목적 및 배경
  ○ 2015년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2011. 8)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규정에 의한 군관리계획 재검토 시기 도래
  ○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방향 및 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의 장기적인 발전방향 구체화 및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규정에 의한 군의회 의견청취 절차 이행
4. 계획의 범위
  ○ 계획구역 : 성주군 행정구역 전역 (616.15㎢)
  ○ 목표연도 : 2025년 (기준년도 : 2015년)
  ○ 계획인구 : 48,500인 (기준인구 46,665인)
5. 추진경위 및 향후계획

  < 추진경위 >
  ○ 2019. 10. 23 :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 심의
  ○ 2019. 11. 13 :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 승인
  ○ 2019. 12. 4 ~ 12. 6 : 토지적성평가 “나”“다”등급 입안여부 심의
  ○ 2019. 12. 19 ~ 2020. 1. 10 : 주민공람
  ○ 2020. 1. 14 ~ : 군 관련실과(기관) 협의 중

  < 향후계획 >
  ○ 2020. 2 : 군의회 의견청취
  ○ 2020. 3 : 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
  ○ 2020. 4 : 경상북도 승인신청 및 관련부서(기관) 협의
  ○ 2020. 6 :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결정고시

6. 군의회 의견청취 주요내용

가. 용도지역

① 성주도시지역

○ 준공업지역 → 준주거지역 : A = 24,960㎡ (1개소)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A = 10,160㎡ (1개소)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A = 195,000㎡ (1개소)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A = 124,000㎡ (3개소)

② 가천도시지역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A = 353,200㎡ (7개소)

③ 초전도시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A = 24,790㎡ (1개소)

○ 자연녹지지역 → 제1종일반주거지역 : A = 4,910㎡ (1개소)

○ 생산녹지지역 → 자연녹지지역 : A = 103,370㎡ (8개소)

④ 비도시지역

○ 농림지역 → 계획관리지역 : A = 2,236,752㎡ (42.5%)

→ 생산관리지역 : A = 1,570,387㎡ (29.8%)

→ 보전관리지역 : A = 1,445,576㎡ (27.7%)

○ 보전관리지역 → 계획관리지역 : A = 346,582㎡ (65.0%)

→ 생산관리지역 : A = 186,655㎡ (35.0%)

나. 용도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① 성주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 모금물마을 : 48,290 → 53,000㎡ (증 4,710㎡)

② 가천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 명덕마을 : 9,300 → 10,620㎡ (증 1,320㎡)

○ 화죽마을 : 17,900 → 19,390㎡ (증 1,490㎡)

③ 초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 노루뫼마을 : 15,800 → 58,010㎡ (증 42,210㎡)

※ 안노루뫼마을 합병

○ 궁전마을 : 26,470 → 29,250㎡ (증 2,780㎡)

○ 안노루뫼마을 : 18,770 → 0㎡ (감 18,770㎡)

④ 비도시지역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 금수면 광산지구 : 110,670 → 114,525㎡ (증 3,855㎡)

○ 월항면 안포지구 : 86,670 → 158,065㎡ (증 71,395㎡)

○ 대가면 복합테마형 클러스터단지 : 543,820 → 141,760㎡ (감 402,060㎡)

○ 주거형개발진흥지구(관화, 옥련, 용정, 신파, 수촌) 폐지 5개소 (감 1,188,550㎡)

다. 군계획시설 (주간선도로, 공공청사)

① 성주도시지역

○ 대로1-4호선 및 대로3-3호선 폭원축소 [기 이용중인 현황도로 수용]

○ 공공청사 (신설 1개소, 변경 1개소, 폐지 1개소)

- 성주보건소 : 0 → 5,600㎡ (증 5,600㎡) [기 조성된 시설 수용]

- 성주군청 : 8,550 → 10,142㎡ (증 1,592㎡) [확장계획 반영]

- 구)경찰서부지 : 4,200 → 0㎡ (감 4,200㎡) [구)경찰서부지 현실화]

② 초전도시지역

○ 대로3-1호선 폭원축소 및 노선연장 [기 이용중인 현황도로 수용]

③ 비도시지역

○ 고속국도, 국도, 국지도, 지방도 변경 [기 이용중인 현황도로 수용]

○ 공공청사 : 신설 1개소 (성주소방서, A = 6,521㎡) [기 조성된 시설 수용]

7. 검토의견

본 안건은 2030년 성주군 기본계획의 단계별 개발방향 및 계획을 수용하여 도시의 장기발전 방향 구체화와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의거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해 군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2025년 성주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은 농지법등 개별 법령과 2030년 성주 군기본계획 내용 반영 등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주민불편과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용도지구 정비, 군계획시설의 현행화로 장래 개발용지를 확보하고 추진중인 주요사업과 현실 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써 군관리 계획의 재정비를 통해 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건전한 도시 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 여건과 특성에 부합하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